

상명대학교 2025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상명대학교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서는 2025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 학기제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실습 기관에서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개요

현장실습 학기제 프로그램은 실습기관은 전공지식을 갖춘 인력을 공급받고, 학생은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2. 실습 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전공 관련 직무수행 기회 부여와 교육·지도가 가능한 기관

3. 실습 학생

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써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재학생

나. 세부 신청 자격은 실습 기관과의 업무 상황 등으로 고려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 2025학년도 1학기 현재 8학기 재학생, 학기 초과/휴학/유예/수료생, 기존 계절제 현장실습 학기제 프로그램(해외 포함) 참여 학생 지원 불가

※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 실습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 하는 경우
- (실습 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 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학점인정 불가

4. 학점인정

구분	학기 중	방학 중
기간	16주	1개월 또는 8주
인정 학점	전공선택 또는 융합선택 15학점	전공선택 또는 융합선택 3학점
기타	현장실습학기제로 인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실습 기간 : 2025년 6월 24일(화)에서 8월 31일(일) 중 1개월 또는 8주 이상

(※ 실습 기관별 실습 기간이 다를 수 있음)

II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진행 일정

구분	일정	진행 내용
실습 기관 참여 신청	4월 14일(월) ~ 5월 2일(금)	- 실습 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계획과 실습 기관별 상황 등을 검토하여 실습 기관 선정
실습 기관 승인	5월 7일(수) ~ 5월 9일(금)	
학생 지원 및 면접	5월 12일(월) ~ 6월 13일(금)	- 실습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 평가 시행 후 최종 실습생 선발
현장실습 준비	6월 23일(월)까지	- 직무교육 등 - 3자 협약서 작성 [학생-대학-실습 기관] - 보험 가입
현장실습 진행	6월 24일(화) ~ 8월 31일(일) 중	- 현장실습 진행 - 1개월 또는 8주 이상
평가 진행	이후	- 관련 서류 제출(출석부 등) - 실습지원비 지급

2. 실습 기간 및 시간

가. 실습 기간 : 2025년 6월 24일(화) ~ 8월 31일(일) 중 1개월 또는 8주 이상

(※ 실습 기관별 실습 기간 다를 수 있음)

나. 실습 시간 : 주 40시간

1)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운영(주 5일 운영)

단, 실습 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2) 1주간 4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 시간 연장 가능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은 운영할 수 없음.

단, 실습 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 학교와 실습 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실습 기관 자격 및 준수사항

가. 실습 기관은 다음 각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실습 기관))

1) 현장실습 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 학기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5) 현장실습 학기제 운용 및 학생 지도, 관리를 담당할 현장 교육 담당자를 배치할 것
- 6) 그 밖에 이 고시를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나. 실습 기관은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함

- 1) 실습 기관은 실습생(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정의 교육 시간을 배정해 실습 기관 교육을 운영해야 함
- 2) 교육 시간은 실습 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함
- 3) 실습 기관에서는 현장실습 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의 비율이 10/100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배정해 운영해야 하고, 교육 시간과 실습 시간 비율을 기업 참여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 4) 배정된 교육 시간 동안은 필수적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 시간에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함
- 5) 세부 교육 내용은 붙임의 실습 기관 참여신청서에 입력하여 제출해야 함

4. 실습 기관에 대한 점검

가. 신규 참여 실습 기관은 사전 서면 점검서를 반드시 기재해 제출해야 함

나. 화학물 및 유해 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등의 경우 실습 기관을 방문해 사전 현장점검을 시행함

다. 신규 참여 실습 기관, 기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습 기관은 현장점검을 시행함

5.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현장실습학기제 지원 가능 분야

단과 대학명	전공명
인문사회과학대학	역사콘텐츠전공, 지적재산권전공, 문헌정보학전공, 공간환경학부, 행정학부, 가족복지학과, 국가안보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경영경제대학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글로벌경영학과, 융합경영학과
융합공과대학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핀테크전공, 빅데이터융합전공, 스마트생산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지능IOT융합전공, 게임전공, 애니메이션전공, 한일문화콘텐츠전공, 생명공학전공, 화학에너지공학전공, 화공신소재전공
문화예술대학	식품영양학전공, 의류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무용예술전공, 조형예술전공, 생활예술전공, 음악학부

※ 학과별 설명자료는 아래 주소를 클릭하고,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대학·대학원 소개 참조 (<https://www.smu.ac.kr/kor/edu/seoul01.do>)

6. 보험 가입

- 가. 상해보험(학교)과 산재보험(실습 기관) 가입 필수
- 나. 실습 기관은 실습 시작일 이전 산재보험 가입
- 다. 실습 기관은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증명서를 실습 시작 이전에 학교로 제출해야 함

7. 휴일 보장 및 출석 관리

- 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나. 다음은, 추가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 1)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의무 수행일
 -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일
 -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 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습 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해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를 시행
- 다. 기계작동 및 실험 기반 실습 등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 기관의 현장 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하에 실시되어야 함
- 라. 공휴일, 휴일(추가적 유급휴일 포함) 및 실습 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 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해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 학기제가 시행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 관리함
- 마. 재난 상황 시 실습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실습 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 기간(또는 일수)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시행할 수 있음
 - 1) 재택실습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 일수로 인정함
 - 2) 재택실습은 실습 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 기관의 요청 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해야 함

8. 협약 체결

- 가. 협약서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실습 기관-학생 간 협약을 체결함
- 나. 학교의 총장 - 실습 기관의 대표자 - 학생 간 3자 협약을 체결함

9. 실습지원비

- 가. 실습 기관은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학교는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지원금 962,880원(8주 기준)을 지원함
- 나. 실습 기관이 학생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실습지원비+학교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학교는 학교 지원금 962,880원(8주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의 25%)을 실습 정상 종료 후 실습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습지원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하며, 학교 지원금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함

라.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 당해 연도 최저시급 × 월 단위 실습 시간 수 × 직무 수행 실습 시간 비율
(직무 수행 실습 시간 = 전체 실습 시간 - 교육 시간)

2025학년도 최저임금	교육 시간 비율	실습 시간 비율	월 지원금
월 2,096,270원	25%	75%	1,572,202원 이상

※ 2025년 최저임금 : 시급 10,030원

Ⅲ 실습 기관 신청

1. 실습 기관 참가 자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기관

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 벤처기업 가능)

다. 실습 기관 불인정

1)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2)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사업

3)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4) 사업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현장실습 학기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 소비, 향락,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공급 등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나)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한 사업체

다) 다단계 판매업체

라)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습 기관

2. 신청 방법

가.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붙임 1) 작성 후 e-mail로 제출

나. 본교와 처음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전 서면 점검서(붙임2) 작성 후 함께 제출

다. 운영계획서 작성 시 실습 직무와 관련된 학과와 전공 사항 기입

1) 대상 학과 또는 전공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계열까지 확대하여 운영 가능

2) 전공 무관 등의 형태로는 운영할 수 없음

3. 프로그램 관련 실습 기관 요청 사항

가. 운영계획서 작성 후 기한 내 e-mail로 제출(smupr5199@naver.com)

나. 학생 선발과 협약 진행(학교-실습 기관-학생 간 3자 협약 : 우편으로 진행)

다. 학생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e-mail로 제출(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 제출)

라. 실습 진행 중 학생 출석부와 평가표 작성과 제출

마. 세부 내용은 프로그램 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바. 실습 기관 참여신청서에 기재된 진행 절차와 일정에 맞춰 선발 결과를 학교 측으로 즉시 회신 요망

IV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

- 현장실습, 산업체 과제 수행 등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대학’과 ‘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산학협력 지원사업 등에 적용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마일리지 : 실습 기관이 지급한 현장 실습 비용에 대해 1만 원당 1마일리지 부여
- 기업 마일리지 활용 영역
 - 기업 R&D 지원사업 등 관계 부처·지자체의 16개 사업에 기업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가점 등 우대
 - 세부 내용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www.muic.or.kr>) 참고

문의처

상명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서울)
T. 02-2287-7014/7176